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2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(대통령령)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 제4항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,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의 활성화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사용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3조의2)

## 5. 검토의견

- 안 제13조의2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2023년 6월 13일 개정·시행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은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.
-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한 지방공무원의 보상 방법에 있어서 수당과 연가 중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실제 업무 현장에서 업무환경, 업무 과중, 조직문화 분위기 등의 사유로 연가 전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관·부서장은 불필요한 업무 과정의 간소화 및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
붙 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